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750 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 박성훈・박충권・고동진

김성원 · 조배숙 · 한지아

김민전 • 이양수 • 이헌승

김기웅 · 김도읍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「국가보훈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」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20호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12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780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20	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15조의2	사용료등의 감면	2032. 12. 31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